

기획재정부 고시 제2021-34호

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 및 같은 조 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공익목적 기부금을 지정하여 고시 하며,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39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지정취소 요청한 단체에 대해 같은 조 제12항에 따라 공익법인 지정을 취소하여 고시합니다.

2021년 12월 31일

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

1. 공익법인 신규 지정(1,058개)

※ 공익법인으로 인정되는 기간 : 2021.1.1. ~ 2023.12.31. (3년간)

(사)고령신씨장학회

(사)세로토닌문화

치재 사회적협동조합

(사)캠프리딩코리아

(재)한국공간복지재단

.

.

.

.

.

(사)대한지리학회

.

.

.

.

.